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기준을 초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폐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구정의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률에 위임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조문 정비
(안 제17조제1호 및 제4호)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상위법에 위임 없이 기준을 초과하여 규정한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제명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으며
 - 안 제17조제1호의 유료화장실 편의용품 비치 제공 및 같은 조 제4호의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설치·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규정을 삭제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09 호
----------	---------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유료화장실의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구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정비(안 제17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 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7.9.28. ~ 10.1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예산이 허용하는”을 “예산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u></p>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중화장실 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 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다.</u></p>	<p>제1조(목적) -----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u>」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공중화장 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 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 한다.</u></p>	<p>제2조(정의) ----- “<u>공중화장실 등</u>”이란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u>」 ----- ----- 따른 ----- ----- -----.</p>
<p>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 <u>각호 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 의 적용범위를 따른다.</u></p>	<p>제3조(적용의 범위) ----- <u>각 호</u> ----- ----- ----- -----.</p>
<p>제5조(설치기준) ①<u>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사 항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p>제5조(설치기준) ① 「<u>공중화장실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 ----- -----.</p>

1. ~ 4. (생략)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1. ~ 4. (현행과 같음)

5. -----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제6조(위탁관리 등)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
----- 예산의 -----

-.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에 따라-----

-----.

②제1항에 따라 -----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 4. (생략)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

--- 각 호-----

-----.

-----.

-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 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 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 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에 따른-----.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 각 호-----
-----.

<삭 제>

2. 제16조에 따른-----

한다.

3. (생략)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
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제1
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1조에 따른-----

-----.